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안 제8조)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T/F팀, 청렴정책팀과 합의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을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및 농산물의 물류·유통개선사업

제8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양수장 관리비 지원사업

9. 공공비축미곡 매입·운반·보관 및 양정관련 지원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자재의 공급)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①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 ---.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	6. “농산물”이란 「농어업·

농촌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등) ① (생
략)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
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
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
는 지원사업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3. ~ 5. (생략)

6.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
사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
한다.

7. “식품”이란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
다.

8. “식품산업”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
한다.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각 호-----
-----.

1.-----농산
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
입-----

2.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산물의 품목별 생
산자 단체 자조금의 지원사업

3. ~ 5. (현행과 같음)

6.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및 농산물의 물류·유통개선사업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8. (생 략) <u><신 설></u>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생 략) ②시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11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9조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및 양수장 관리비 지원사업 9. 공공비축미곡 매입·운반·보관 및 양정관련 지원사업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의2(농자재의 공급)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 ----- ----- ----- ----- -----.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
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
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실·과		선산출장소 농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장 상 봉
	담 당	이 찬 우
	담 당 자	김 경 호 (480-5762)